광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8노379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8노3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길(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본석(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고정1017 판결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의 별지 범죄일람표 15, 17, 18, 19의1, 20, 21번의 각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5, 17, 18,21, 25번의 각 모욕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1, 2, 4의1, 5, 6의1, 7의1, 9의1, 10, 14의1, 16, 24번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이라고만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고만한다) 22, 26, 27번의 각 모욕의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범죄일람표 1의2, 3, 4의2, 6의2, 7의2,8,9의2, 11, 12, 13, 14번의 각 모욕의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범죄일람표 19의2, 23, 25, 28번의 모욕의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증각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판결 부분 및 무죄 부분의 각모욕의 점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범죄일람표 19의2, 23. 25. 28번의 각 게시글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허위로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5, 17, 18, 19의1, 20, 21번의 각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점을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각 모욕의 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부분의 심판대상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범죄일람표 15, 17, 18, 19의1, 20, 21번의 각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범죄일람표 1의1, 2, 4의1, 5, 6의1, 7의1, 9의1, 10, 14의1, 16, 24번의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다.

4.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1의1, 2, 4의1, 5. 6의1, 7의1, 9의1, 10, 14의1, 16, 24번)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각 게시글 중 드러낸 사실들은 모두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위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게시글에 기재된 사실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19의2, 23, 25, 28번)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페 활동으로 인한 심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 진행 중 글이 게시 된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그 작성경위와 표현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 작성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범죄일람표 19의2, 23, 28번 모욕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9의2, 23, 28 번과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위 게시글의 작성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일람 표 19의2, 23, 28번 게시글 작성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다.

2) 범죄일람표 25번 모욕의 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에 대해 비난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모를 욕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범죄일람표 25번의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점, 2 위 게시글의 제목은 "AO"로 그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는하나 그 게시글 본문의 내용("제목의 저 말... 미친년아", "니가 에미라서 그런다 미친년아 기억나나요? 이런 요상스러운 말! 지나 가는 사람에게 함 물어봅시다", "1. 과연 이런 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말은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과 문맥을 살펴보면 위 제목 부분의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내용 이후에 이어진 "2. 이런 더럽고 요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의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25번의 게시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범죄일람표 15, 17, 18, 19의1, 20, 21번의 각정 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범죄일람표 25번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25번 모욕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유죄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위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무죄 부분의 범죄일람표 1의1, 2, 4의1, 5, 6의

1, 7의1, 9의1, 10, 14의1, 16, 24번의 각 정보통신 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0:53경 위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상한 여자가 너를 함부로 이용하고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는 자식이라느니 너를 말하며 뒤로는 너의 엄마를 욕보이는 저 행위를 오늘 아침까지 하고 있구나', '또 입으로 손으로 그런 글들을 양산하여 수많은 관계없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게 만든 그 악한 인간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9의1, 2, 20, 23, 28번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 1.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 1. 고소장
- 1. 각 게시글 자료(증거기록 제78, 78-1, 83-1, 92, 92-1쪽)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일람표 19의1, 20번 게시글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을 모욕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위 변경된 공소사실의 게시글은 피고인이 과거에 작성한 글을 다시 올린 것으로, 그 글의 작성경위와 내용, 사용된 표현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위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반복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모욕의 표현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터넷 카페 운영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들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일람표 25번 모욕의 점(원심판결 유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14:16경 위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번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5의 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범죄일람표 제15, 17, 18, 21번 모욕의 점(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의 아동학대예방 카페 'C'의 회원으로 닉네임 'D'와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G'의 매니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1:29경 위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AE"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그 중 막장행동대장이신 분들[1]의 그룹은 해봐야 100명은 넘지 않습니다. -중략-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의도와 관계없이 최악으로 이용당하는 분들이라는 겁니 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 번 제15, 17, 18, 21번 기재와 같이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게시글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거나, 그 표현들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1 범죄일람표 15번의 "막장행동대장이신 분들"이라는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고, 그 이후의 "의도와 관계없이 최악으로 이용당하는 분들"이라는 표현도 위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를 거칠게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 2 범죄일람표 17번 게시글에서 모욕적인 표현들은 그 게시글 전체의 문맥과 내용("그런데 이렇게 미친여자가 되어 있네요. 나는 왜 G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그렇게 견딜수 없었을까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 3 범죄일람표 18번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한 여 자"라고 표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글 게시 전 피해자가 'G' 카페에"AH"라는 제목의 글을 스스로 게시한 점, 피고인의 위 게시글의 제목은 피해자의 위 게시글과 동일한 "AH"이고 그 본문의 첫 내용은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 같았는데, 결과가 어땠지요?"로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위 게시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게시글의 전체 문맥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한 여자"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하였다고 표현한 것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 4 범죄일람표 21번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회원들을 "우롱하고 모함"하였다거나,"카페를 더럽히고 어지럽힌 것"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긴 하나 그 내용 자체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박동욱 강성대

미주

[1]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막장행동대장이신 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막장행동대장이신 분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